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
----------	----

제출일자 : 2001. 12. 4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쓰레기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주민의 청결유지책임제 도입을 위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한편, 주민의 청결유지 책무·이행명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조례로써 설정하고, 사안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의3 제1항)
- 나.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증거력 확보와 사실확인 및 소재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불법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정함 (안 제18조의3 제2항)
- 다. 구청장이 청결유지조치를 명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의5 제1항)
- 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를 대청소 미실시, 쓰레기 방치, 무단 소각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18조의5 제2항)
- 마.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분리 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204호), 환경부 「청결유지책임제 시행지침」
- 나. 예산조치 : 1,000만원 기편성(2001년 예산)
-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2001. 11. 10 ~ 11. 29(주민 제출의견 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제4조제2호 및 제6조, 제7조”를 “제6조 및 제7조”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제4조제2호 및 제6조”를 “제6조”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청결포상금) ① 구청장은 쓰레기를 무단투기 또는 불법소각 등 불법 처리행위신고로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에게 청결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결포상금은 과태료부과 금액의 80%이내로 하며, 사안별 포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4(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5(청결유지 조치)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제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과 다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18조의4(청결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대청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고 한다)는 대청소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② 소유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부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신설></p>	<p>제18조의4(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8조의5(청결유지 조치)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현행	개정안
	<p>1. <u>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하는 행위</u></p> <p>2. <u>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u></p> <p>3. <u>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u></p> <p>4. <u>기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u></p> <p>③ <u>제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과 다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u></p>